

#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503
------------------	-----

## 1. 제안이유

상위법인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에 의거 집행(업무처리)이 가능하므로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시정을 구현 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폐지

## 3. 관계법령

-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
- 행정규제 정비지침

붙 임 : 1.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관련법규

#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는管理廳은他工作物의管理者로하여금道路工事を하게하거나그維持를하게할수있다

第30條 (他工作物에關한工事의施行) ①管理廳은道路의效用을兼하는他工作物이있을때에는他工作物에關한工事を施行하거나그維持를할수있다

②第1項의規定에依한他工作物에關한工事 또는 그維持는이를道路工事 또는維持로본다

第31條 (工事原因者에對한工事施行命令) 管理廳은 道路工事以外의工事 또는行爲(以下他工事 또는 he行爲라한다)로因하여道路工事が必要하게된때에는當該他工事의施行者 또는 he行爲者로하여금그工事を하게할수있다

第32條 (附帶工事의施行) ①管理廳은道路工事로因하여必要하게된他工事 또는道路工事を施行하기위하여必要하게된他工事와道路工事와함께施行할수있다

②第1項의規定에依한他工事는이를道路工事로본다

第33條 (公共團體等에對한工事施行命令) 管理廳은大統領令이定하는바에依하여道路에關하여直接利害關係가있는公共團體 또는私人으로하여금輕微한道路의修繕에關한工事を하게하거나維持를하게할수있다. <改正 66·8·3>

第34條 (非管理廳의工事施行) 管理廳이아닌者는管理廳의許可를받아道路工事を施行하거나그維持를할수있다. 다만, 大統領令이定하는輕微한道路의維持는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66·8·3>

第35條 (通行料의 徵收) ①管理廳은 道路의 施設인 橋梁·渡船施設·地下道·터널 또는 索道(이하 "橋梁등"이라 한다)의 利用者로부터 그 收益의 限度안에서通行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3·3·10>

②第1項의規定에 의한通行料와 그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國道인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으로 기타의 道路인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道路의 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여야 한다. <改正 70·8·10, 93·3·10, 95·12·6>

[全文改正 70·8·10]

第36條 (非管理廳에依한通行料의徵收) ①第34條의規定에依한工事が橋梁等에關한것일때에는當該工事의施行者は大統領令이定하는바에依하여管理廳의許可를받아一定한期間동안當該橋梁等의利用者로부터그受益의限度내에서通行料를徵收할수있다. <改正 63·2·26, 66·8·3>

②第1項의規定에依한許可를받은者는management廳의定하는바에依하여通行料의徵收期間

(주 67)

道의負擔으로한다 <改正 95·12·6>

②第59條第2項의規定은第1項의境遇에이를準用한다

第61條 (市·郡·區에對한負擔命令) 第56條乃至第59條의規定에依하여 特別市·廣城市 또는 道가負擔하여야할費用은大統領令이定하는바에依하여利益을받는市·郡 또는 區로하여금그一部를負擔하게할수있다. 第60條第2項의規定에依하여市·郡 또는 區가 負擔하여야할道路에關한費用에對하여도또한같다. <改正 66·8·3, 95·12·6>

第62條 (他工作物管理者施行의工事費用) ①第29條의規定에依하여管理廳이他工作物의管理者로하여금施行하게한道路工事와維持에必要한費用은이法의規定에依하여그費用을負擔할者の負擔으로한다. <改正 66·8·3>

②第1項의境遇에있어서他工作物의管理者가當該道路工事또는維持로因하여interest을받을境遇에는management廳은他工作物의管理者에對하여그가받는interest의範圍내에서第1項의規定에依한費用의一部를負擔하게할수있다

第63條 (他工作物工事費用) 第30條의規定에依하여management廳이施行하는他工作物와工事나維持에necessary한費用은當該工作物의管理者의負擔으로한다. 다만, management廳이屬하는地方自治團體가그로因하여interest을받을境遇에는그受益의限度내에서費用의一部를當該地方自治團體로하여금負擔하게할수있다. <改正 66·8·3>

第64條 (原因者負擔金) He工事또는he行爲로因하여必要하게된道路工事의費用은he工事또는he行爲의費用을負擔하여야할者에게그全部또는一部를負擔하게할수있다.

第65條 (附帶工事費用) ①道路工事로因하여必要하게된他工事나道路工事を施行하기위하여必要하게된他工事에necessary한費用은第40條의規定에의한許可(第8條의規定에의한協議또는承認에의하여占有的경우를포함한다)에特別한條件이있는境遇를除外하고는그必要를생기게한限度내에서이法의規定에依하여道路에關한費用을負擔하여야할者が그全部또는一部를負擔한다. 다만, 第44條第3號의規定에의하여占有料를減免받은者は占有으로인하여필요하게된他工事費用의전부를부담하여야한다. <改正 66·8·3, 93·3·10>

②第64條의規定은第1項의道路工事가他工事또는he行爲로因하여必要하게되었을때에는그他工事費用에도이를準用한다

第66條 刪除 <89·12·30>

第67條 (損漬者負擔金) ①management廳은道路를損漬할事業또는行爲를하는者가있을때에는그로因하여必要하게된道路의修繕또는維持에necessary한費用이나損漬의豫防을爲하여

(총 67)